	가 정 통 신 문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111번지(덕은동)	제 2022 - 84 호 담당: 학생생활부 ☏ 031-994-6902

2023학년도 학생 용의복장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본교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본교 용의 복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새로 시작하는 중학교 생활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제5장 학생 용의 복장 규정

제43조(두발)

1. 남녀 학생 모두 두발 길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학생은 두발에 관해 퍼머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44조(복장)

1. 본교 교복의 모양과 색상 등은 추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교복 제정과 선정 관련 절차를 준수해 마련한다.

※ 2023학년도 3월 등교시 자율복으로 등교함.
※ 우리학교 2023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진행 중이며, 추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제45조(신발)

1. 실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용적이고 편리한 실내화를 신는다.
2. 등교 시 실외화를 신고 와서 실내화로 갈아 신을 수 있다.(다만, 슬리퍼 형태의 신발은 실외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체육관 입장시에는 전용 실내화를 권장하되 교내에서 착용하는 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
4. 외부 활동(점심시간 등)이 끝난 후에는 건물 현관 앞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을 수 있다.
5. 하교 시에는 실외화로 갈아 신은 후 하교한다.

실내화 (예시)
- 형태 : 뒷꿈치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실내화 착용(체육관 사용 겸용 가능)
- 색상 : 흰색





제47조(화장)

1. 모든 액세서리 착용과 피어싱은 금지하나, 고가품이 아닌 귀걸이와 목걸이는 허용한다. 귀걸이는 귓불(귀 아래)에 달라붙는 것을 허용하며, 목걸이는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2. 피부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기초화장은 허용하나, 색조 화장 및 화장품을 소지하는 행위는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가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하고 지도할 수 있다.

2023. 2. 23.

덕은한강중학교장(직인생략)